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735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다735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1나66179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0가합22652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한국교직원공제회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A 주식회사

판결 선고 2016. 2. 1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1나66179 판결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이유

가. 심판대상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명시적 일부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9. 19.부터 2010.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그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2013. 8. 22.부터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그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불복의 범위를 '101,0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9.부터 2012. 9. 18.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로 특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부 승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판결 이유에 불복하여 한 상소는 허용할 수 없는바, 원고의 청구 중 손해배상원금 부분은 원고가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고의 이익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에서 일실이익을 원금에 산입하여 손해 주장을 하였고 지연손해금을 2007. 9. 19.부터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원고가 상고장에 불복범위로 '지연이자'라고 기재한 점을 더해 보면, 원고는 일실이익이 아니라 지연손해금에 불복하여 상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의 상고와 관련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손해배상원금에 대한 2007. 9. 19.부터 2012. 9. 18.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에 한정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원금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상고이유로 보이는 손해의 발생시점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나. 손해의 발생시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7. 9. 19.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하였으나,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하게 된 투자금액 상당으로서, 그 손해가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은 이 사건 펀드의 최종 만기인 2012. 9. 19.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불법행위의 성립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1)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의 손해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았고 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나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한 투자신탁에 관한 운용계획서가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투자신탁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를 담고 있고 그것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자산운용회사는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신탁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운용계획서를 투자자에게 교부·제시한 경우, 그 운용계획서가 개별약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더라도 그 내용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10532, 10549 판결 참조). 그리고 사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6조 제1항에 정한 투자설명서 작성·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투자자가 일반투자자가 아니라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펀드에 300억 원을 투자하는 원고에 대하여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정보제공서는 피고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B의 채무 규모, 이 사건 자금의 사용처,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내역과 같은 이 사건

사업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정보제공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원고가 300억 원의 투자를 결정할 때까지 이를 수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원고가 300억 원을 투자할 무렵 B의 실제 채무 규모, 후순위 투자자, 이 사건 확약서의 징구 여부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항들은 모두 원고의 투자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로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펀드의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균형성을 갖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이 사건 투자를 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상, 피고의 위와 같은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산운용사의 투자자보호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 평가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담보물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갑 제37호증을 근거로 2012. 6. 21.을 기준으로 한 21,798,629,360원을 이 사건 펀드 만기일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B의 청산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갑 제37호증은 이 사건 건물과 토지의 가액을 최대한 낮게 평가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관하여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